

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3.12.

제 출 자 : 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당직수당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(안 제7조제4항)

나. 조례의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함 (부칙)

3. 참고사항

2004년 예산편성 지침

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7조(당직근무 및 비상근무)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, 도난,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, 숙직,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·사변 또는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히 이탈하지 못하며,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 〈신설〉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7조(당직근무 및 비상근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⑤(현행과 같음).